

1

2021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단위 : 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자지원등급
'20년 한도액	1,498,300	1,331,800	1,276,300	1,173,200	1,007,200	566,600
'21년 한도액	1,520,700	1,351,700	1,295,400	1,189,800	1,021,300	573,900
인상률	1.50%	1.49%	1.50%	1.41%	1.40%	1.29%

2

2021년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

① 노인요양시설

(단위 : 1일, 원)

등급	'20년 수가	'20년 본인부담	'21년 수가	'21년 본인부담
1	70,990	14,198	71,900	14,380
2	65,870	13,174	66,710	13,342
3,4,5	60,740	12,148	61,520	12,304

② 공동생활가정

(단위 : 1일, 원)

등급	'20년 수가	'20년 본인부담	'21년 수가	'21년 본인부담
1	62,230	12,446	63,050	12,610
2	57,750	11,550	58,510	11,702
3,4,5	53,230	10,646	53,930	10,786

③ 주야간보호

(단위 : 원)

등급		'20년 수가	'20년 본인부담	'21년 수가	'21년 본인부담
3시간 이상	1등급	35,030	5,255	35,480	5,322
	2등급	32,430	4,865	32,850	4,928
	3등급	29,940	4,491	30,330	4,550
	4등급	28,570	4,286	28,940	4,341
	5등급	27,210	4,082	27,560	4,134
	인지지원등급	27,210	4,082	27,560	4,134
6시간 이상	1등급	46,960	7,044	47,570	7,136
	2등급	43,500	6,525	44,060	6,609
	3등급	40,150	6,023	40,670	6,101
	4등급	38,790	5,819	39,290	5,894
	5등급	37,410	5,612	37,890	5,684
	인지지원등급	37,410	5,612	37,890	5,684
8시간 이상	1등급	58,410	8,762	59,160	8,874
	2등급	54,110	8,117	54,810	8,222
	3등급	49,960	7,494	50,600	7,590
	4등급	48,590	7,289	49,220	7,383
	5등급	47,210	7,082	47,820	7,173
	인지지원등급	47,210	7,082	47,820	7,173
10시간 이상	1등급	64,350	9,653	65,180	9,777
	2등급	59,610	8,942	60,380	9,057
	3등급	55,070	8,261	55,780	8,367
	4등급	53,680	8,052	54,370	8,156
	5등급	52,320	7,848	52,990	7,949
	인지지원등급	47,210	7,082	47,820	7,173
12시간 이상	1등급	69,000	10,350	69,890	10,484
	2등급	63,930	9,590	64,750	9,713
	3등급	59,050	8,858	59,810	8,972
	4등급	57,690	8,654	58,430	8,765
	5등급	56,310	8,447	57,040	8,556
	인지지원등급	47,210	7,082	47,820	7,173

④ 단기보호

(단위 : 1일, 원)

등급	'20년 수가	'20년 본인부담	'21년 수가	'21년 본인부담
1	57,320	8,598	58,070	8,711
2	53,090	7,964	53,780	8,067
3	49,040	7,356	49,680	7,452
4	47,740	7,161	48,360	7,254
5	46,450	6,968	47,050	7,058

⑤ 방문요양

(단위 : 원)

방문당 시간	'20년 수가	'20년 본인부담	'21년 수가	'21년 본인부담
30분	14,530	2,180	14,750	2,213
60분	22,310	3,347	22,640	3,396
90분	29,920	4,488	30,370	4,556
120분	37,780	5,667	38,340	5,751
150분	42,930	6,440	43,570	6,536
180분	47,460	7,119	48,170	7,226
210분	51,630	7,745	52,400	7,860
240분	55,490	8,324	56,320	8,448

⑥ 방문목욕

(단위 : 원)

구분	'20년 수가	'20년 본인부담	'21년 수가	'21년 본인부담
차량이용(차량 내)	74,470	11,171	75,450	11,318
차량이용(가정 내)	67,150	10,073	68,030	10,205
차량 미 이용	41,930	6,290	42,480	6,372

⑦ 방문간호

(단위 : 원)

방문당 시간	'20년 수가	'20년 본인부담	'21년 수가	'21년 본인부담
30분 미만	36,110	5,417	36,530	5,480
30분~60분 미만	45,290	6,794	45,810	6,872
60분 이상	54,490	8,174	55,120	8,268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요

□ 도입 배경

- 노인의 삶의 질 개선 및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도모를 위해
공적 노인요양보장체계 확립 필요성 제기
 - 급속한 고령화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은 급증하였으나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가정에 의한 돌봄은 한계 도달
- 3년간의 시범사업('05년~'08년)을 거쳐 '08.7월 제도 시행

□ 대상자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을 가진
자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자
 - 장기요양 수급자 수('19.12월)는 772,206명(전체 노인의 8.8%)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체인구	50,001	50,291	50,581	50,909	51,169	51,448	51,757	52,034	52,273	52,427	52,557	52,880
노인인구	5,086	5,286	5,449	5,645	5,922	6,193	6,463	6,719	6,940	7,311	7,612	8,003
%	10.2	10.5	10.8	11.1	11.6	12.0	12.5	12.9	13.3	13.9	14.5	15.1
수급자수	214	287	316	324	342	378	425	468	520	585	671	772
%	4.2	5.4	5.8	5.8	5.8	6.1	6.6	7.0	7.5	8.0	8.8	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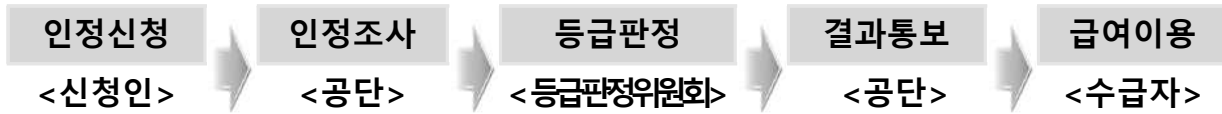
주) 노인인구는 의료보장인구(건강보험가입자+의료급여수급자) 기준으로 통계청 자료와 차이가 있음

노인인구 비율(%) = 노인인구/전체인구, 수급자수 비율(%) = 수급자수/노인인구수, 이용자수 비율(%) = 이용자수/수급자수

□ 장기요양 등급 판정

- (인정조사) 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자의 일상생활 수행 정도를
조사한 후 등급판정위원회 결정으로 수급 여부 및 등급 부여

< 등급 판정 절차 >



* 227개 건보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에 설치되어있으며, 위원장 1인(시·군·구청장 위촉)과 의료인·사회복지사 등 전문가 총 15인으로 구성·운영

- (장기요양등급) 요양 필요 정도에 따라 1~5등급+인지지원등급(경증 치매)으로 구분, 등급에 따라 급여량 차등 지급

등급	심신 상태	장기요양 인정점수
1등급	일상생활에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	95점 이상
2등급	일상생활에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일상생활에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일상생활에 일정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치매환자(노인성질병에 한함)	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노인성질병에 한함)	45점 미만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 (시설급여) 요양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 이용
- (재가급여) 가정에 거주하는 수급자가 월 한도액 내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이용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한도액	1,498,300	1,331,800	1,276,300	1,173,200	1,007,200	566,600

- (복지용구)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인지기능을 지원하는 용구
 - 재가 수급자에 한정하여 연 160만원 내에서 이용 가능
- (본인부담금) 재가 15%, 시설 20%, 저소득층은 본인부담 경감

	현행	변경
중위소득 50% 이하	50% 경감	60% 경감
중위소득 51~100%	-	40% 경감